##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(신동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207 발의년월일: 2018. 2. .

발 의 자: 신동욱 의위

찬 성 자: 김달호의원, 박경준의원

남연희의원, 은복실의원

김종곤의원(5명)

#### 1. 제안이유

급격한 고령화 및 가족해체 등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고독사에 대한 염려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라. 실태조사 실시(안 제5조)
- 마. 지원대상 및 지원(안 제6조 ~ 제7조)
- 바. 민·관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노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
다. 기 타: 입법예고(2018. 2. 5. ~ 2. 9.)결과, 특이할 사항 없음

###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고독 사에 대한 염려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노인"이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"구"라 한다) 관내의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.
  - 2. "홀로 사는 노인"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.
  - 3. "고독사"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상당기간 경과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
  - 4. "고독사 위험자"란 경제적,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사는 노인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추진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

- 을 위한 추진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·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2.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
- 5.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독사 위험자
  - 2. 동 주민센터,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
  - 3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
- 제7조(지원)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
- 2. 가스·화재·활동감지기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
- 3.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,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
- 4.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 제공
- 5.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
- 6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·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< 관계법규>

#### □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3. 2. 복지건설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발의자: 2018. 2. 2. / 신동욱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18. 2. 13.

다. 상정일자: 2018. 2. 26.

(제236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)

#### 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신동욱 의원

나. 제안이유

급격한 고령화 및 가족해체 등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고독사에 대한 염려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라. 실태조사 실시(안 제5조)

- 마. 지원대상 및 지원(안 제6조 ~ 제7조)
- 바. 민·관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
다. 기 타: 입법예고(2018. 2. 5. ~ 2. 9.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노인복지법」제4조와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연고 없이 홀로 사망하는 고독사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 사망자가 835명으로 최근 4년 새 80%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 급한 실정임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정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보여지며,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

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
 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, 조례안 제7조
  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임.
- 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.
- 7. 토론요지: 없음.
- 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.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